

2026년 10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시간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

2026년 10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강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일

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

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

가. 모집 분야

- 1) 모집분야: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시간강사
- 2) 모집과목: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
 - ※ 스포츠 강사 및 1개월 이상 단위 시간강사(예: 자유학기제 강사 등) 제외
 - ※ 1개월 이상 기간제교사 희망자 제외

나. 지원 자격

- 1) 내국인으로서 교원 자격증(유·초·중·고·특수·보건·사서·전문상담·영양) 소지자
 - ※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 별표1,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별표2 강사자격 기준에 따름
(단,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- 2) 만65세 이하인 자

학기	기간	나이제한	생년월일	비고
2026학년도 2학기	'26. 9. ~ '27. 2.	만 65세	1961. 9. 1. ~	2026 한시적 적용

※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자(만 65세까지) : 2027년 3월까지 등재 가능

다. 지원의 제한

- 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